

# 환경관리인의 법적명칭 ‘배출시설관리인’부터 고쳐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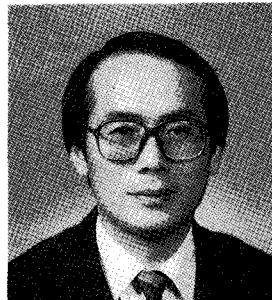
## 기업

체에서 환경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적명칭은 “배출시설관리인”으로 되어 있다. 이 명칭은 1963년 12월 31일 법률 제1436호로 제정공포된 공해방지법이 단일법으로 탄생하면서부터 현 12개 환경복수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금 까지 약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지칭되어온 것이다.

현행 환경법상의 “배출시설관리인”的 선임기준을 보면 대기·수질 등 1,2종 업체는 분야별 환경기사 1급이상, 3종업체 및 4,5종업체중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는 분야별 환경기사 2급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기술인력은 환경기사(대기, 수질, 소음·진동)자격 취득 인원이 약 36,000여명(구 공해관리기사포함)으로 이중 실제 배출시설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체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매년 환경학과를 보유한 전국 63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약 3,500여명의 환경전공자들이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기술 및 공학분야는 종합 공학으로서, 현장환경업무를 관리하려면 화학, 물리, 생물 등의 기초과학 뿐 아니라, 화공, 토목, 기계, 전기, 법률 등 다양한



張 塚 榮  
(본 연합회 회장)

**법적명칭조차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배출시설관리인”으로 되어 있어 관장해야 할 업무와 격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인식의 결여로 인하여 사기를 저하시 키고 있다.**

지식을 터득해야 되고 이들을 조화있게 연구 활용하여야 되며 특히 기업체의 환경업무에서는 원료사용, 생산공정(배출시설), 폐수 및 폐기물처리, 작업환경개선, 오염물질 저감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이르기 까지 제반 환경행정 및 기술적 업무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환경학과를 졸업하여 기

업체의 배출시설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환경업무에 접하게 되면 기대와는 달리 기계운전요원(operator)으로 취급되어지며 기업체에서는 들키 되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진급이나 대우 등에서 소외 당하고 환경법상의 지도 단속에 대한 결과의 책임(권한도 없으면서), 양벌규정 등에 대한 불안감에 젖게 된다. 그래서 애초의 사명감과 자긍심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이 분야의 업무를 떠나고 싶어한다. 이는 1991년도의 배출시설관리인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frac{2}{3}$  이상이 이 직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결과가 입증해 주고 있다.

산업환경은 국가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환경관리인의 발전 없이는 산업환경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등식의 논리에서 보면 국가환경보전에 있어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본 연합회에서 양벌규정의 개정, 전담부서의 설치, 관리인의 권한부여, 등등의 권의들은 이와같은 맥락에서이다.

더욱이 법적명칭조차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배출시설관리인”으로 되어 있어 관장해야 할 업무와 격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인식의 결여로 인

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왜? 환경기사가 배출시설관리인으로 불려져야 하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경기사는 근무하는 기업체의 제반 환경영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사의 법적명칭은 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열관리기사의 법적명칭은 열관리사이다.

—일본의 경우 공해방지법상의 법적명칭은 공해방지관리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영법상의 환경기사 및 환경영무담당자는 환경관

리자 내지는 환경관리인으로 명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리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이 많이 있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법적명칭 부터 개정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이지만 사기를 높여주고 다소나마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국가환경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기회에 언급하고자하는 바는 이제 환경분야에도 기능사 제도를 두어서 현장방지 시설의 운전을 담당하는 Operator 역할을 하도록하고 환경기사는 기업전체의 오염저감과 환경보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공

정을 개선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등의 격에 맞는 업무관장이 되도록 함으로서 환경발전을 가속화 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법상의 배출시설관리인의 역할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법 또는 이법의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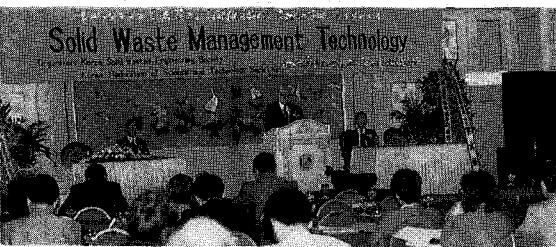
우선 “배출시설관리인”的 법적명칭은 반드시 개정(개칭)되어야 한다. ◀

‘발언대’는 건강한 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발언대’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 (사)한국폐기물학회

## 환경계소식

### 폐기물처리기술 심포지움



(사)한국폐기물학회(회장·김수생)는 지난 3월 27일 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일 폐기물처리 기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처 폐기물관리과 윤서성 국장의 「폐기물의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한 특별 강연에 이어 연세대 이승무교수의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기술에 있어서의 당면문제」, 일본 폐기물학회 Hirayama 회장의 「폐기물처리기술의 문제와 동향」 등 한·일 양국 전문가의 폐기물처리 대책 및 보완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인성과학은 지난 3월 5일 서울중소기업회관에서 「최신의 시료 전처리 기술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3월 31일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스펙트라 피직스사의 HPLC시스템 및 다이오텍스사의 신기술세미나」를 2차례 걸쳐 가졌다.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대표·김제남)은 지난 3월 8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모임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한편 92년도 사업계획과 2천4백만원의 예산 승인을 받았다.

삼성환경기술연구소는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 오염문제는 해결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9일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BAC SYSTEM에 의한 고도 정수 처리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DAGOIS박사의 「BAC 특성 및 PROCESS원리」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